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설치〉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6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44인

나. 발 의 일 : 2024. 7. 3.

다. 회 부 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신설>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김태년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금명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
재 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반도체기술에 관한 연구·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반도체 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반도체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동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사업 ◦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필요한 해외 기업 유치사업 ◦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이 설치된 시·군 등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
관 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반도체산업지원법안”이라 함)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산업²⁾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규모도 2024년 7월 기준 11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50.4% 증가하였음.³⁾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산업 제품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8년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9.1%로 1위였으나, 2019년부터 중국에 이은 2위로 밀려난 이후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으로 2022년에는 18.91%까지 하락함. 반면 중국은 2019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7.2%로 1위를 차지한 이후 우리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음.

또한, 반도체 패권경쟁의 심화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 ACT)」을 통해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국 및 외국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를 위해 추가적으로 2조 엔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에 있음.⁴⁾

1. “반도체기술”이란 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 설계, 응용 등 모든 공정에 연관된 기술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반도체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7월 수출입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4.8.1.
4)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2.28

따라서 개정안은 세계 각국의 반도체 핵심 생태계 육성 및 주도권 장악에 대응하여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 및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⁵⁾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⁶⁾

5)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6)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이에 반도체 산업 지원기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동 기금의 재원 중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는 기금의 용도 사업인 반도체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출연 투자 및 사업의 지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공공자금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은 기금의 용도 사업인 전략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등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및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영수입 등에 재원조달을 의존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여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반도체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반도체

기술에 관한 연구·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반도체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금 신설을 통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타 회계·기금에서 유사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임을 참고하여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이 신설되는 경우 사업 간의 중복을 최소화 하도록 관련 회계·기금 간의 체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사업 사례7>

(단위: 억원)

회계 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18개교 지원	1,085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혁신융자	중소·중견 신규 융자	900
일반회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반도체특성화대학원지원)	6개교 지원	90
일반회계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예비취업자, 재직자 대상 산업계 주도 반도체 교육	43
일반회계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구미국가산단 연결교량 건설 지원	200
일반회계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소재·부품 시험/평가/분석 인프라 및 센터 구축	50
일반회계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설계·제조)(R&D)	신규 12, 계속 47개 과제	629
일반회계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 환경조성	설계지원센터 공간, EDA Tool, 시제품제작 지원	96

자료: 기획재정부

7) 반도체 산업 예산 규모 : (2022년) 0.65조원, (2023년) 1.08조원, (2024년) 1.27조원

한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반도체산업지원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연금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간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출연금 등 의존재원이고, 연구개발 기술료 또한 연도별 편차가 크고, 기술료 부담경감 방안 대책에 따라 납부요율이 대폭 하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재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또한, 타 회계·기금 등에서 유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측면에서 기금 신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중앙행정기관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886	717	689
중소벤처기업부	258	233	196
복건복지부	55	33	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	125	46
他 부처	158	75	95
합계	1,559	1,183	1,130

자료: 기획재정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반도체산업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u>

문의처
02)6788-5152